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인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76
----------	------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4일

발 의 자 : 김인제, 김정태, 우미경, 김기대,
박운기, 우창윤, 유동균, 유찬중,
이창섭, 전철수, 남창진, 이숙자,
이석주 의원(13명)

1. 제안이유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도시계획 관련 중요안건을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의 재위촉시 연임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심의위원의 장기위촉을 제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시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연임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 공백기를 거치지 않고 재위촉 될 경우 이를 연임으로 간주토록 함 (안 제57조제5항 신설).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준용규정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조정함 (안 제63조제1항).
-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의 운영에 적용되는 준용규정을 삭제함 (안 제63조의2제4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

제63조제1항 중 “제5항부터 제10항”을 “제6항부터 제11항”으로 하고, 제63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7조(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u>〈신설〉</u></p> <p>⑤ ~ ⑩ (생략)</p> <p>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제56조, 제57조제2항, 제5항부터 제10항, 제5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준용한다. ② (생략)</p> <p>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제57조제4항부터 제10항, 제58조의2, 제62조의 규정은 자문단의 운영에 준용한다. ⑤ (생략)</p>	<p>제57조(구성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 ⑥ ~ ⑪ (현행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p> <p>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 제6항부터 제11항,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3조의2(도시계획 정책자문단 설치·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p> <p>⑤ (현행과 같음)</p>